

## 감사계약 체결보고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외부감사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합니다.

### 1. 감사인 개황

1-1 당기 계약체결 감사인명	
1-2 당기 계약체결 감사인 고유번호	
1-3 전기 감사인명	

### 2. 감사대상회사 개황

2-1 회사명		
2-2 회사고유번호		
2-3 법인등록번호		
2-4 사업자등록번호(본점)		
2-5 법인 구분		
2-5-1 금융회사에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2-5-2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2-5에서 “사업 보고서 제출 비상장법인”인 경우)	2-5-3 채무증권 등의 증권시장 상장여부	▼ 예 / 아니오
	2-5-4 주권 또는 채무증권 등의 모집 또는 매출 여부	▼ 예 / 아니오
	2-5-5 주권 또는 채무증권 등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2-5에서 “유한 회사”인 경우)	2-5-6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 여부	▼ 예 / 아니오
	2-5-7 변경일자(2-5-6에서 “예”인 경우)	yyyy - mm - dd
2-6 대표자명		
2-7 대표 전화번호		
2-8 주소		
2-9 우편번호		
2-10 당기 사업연도 결산기 변경 여부		▼ 예 / 아니오
2-10-1 결산기 변경내용(2-10에서 “예”인 경우)		월에서      월로 변경
2-11 당기 사업연도 적용 회계처리기준		
2-12 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		▼ 예 / 아니오
2-13 지배주주(특수관계자포함)의 지분율합계(%)		
2-13-1 지배주주 중 최대지분 소유자명		
2-13-2 대표이사와 지배주주와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2-14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		사업연도 종료후      월 이내
2-15 감사위원회의 설치여부		▼ 예 / 아니오
2-15-1 감사위원회 설치 대상여부		▼ 예 / 아니오
2-16 과거 6개사업연도 중 감사인 지정 여부		전기    2기전    3기전    4기전    5기전    6기전
2-17 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대상여부		

### 3. 감사계약 내용

3-1 감사계약 체결 구분	
3-2 신규 외부감사 대상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3-3 회사의 감사인을 선정한 자	
3-3-1 감사가 없는 회사에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3-4 감사인선임위원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 여부	▼ 예 / 아니오
3-5 감사계약 체결일자	yyyy - mm - dd
3-6 감사대상 사업연도	제 기 년 월 부터 년 월 까지 개월
3-7 주권상장법인의 3개 사업연도 연속감사인 경우 당기 감사차수	
3-8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 체결 여부	▼ 예 / 아니오
3-9 감사보수(연결감사보수 포함)	
3-9-1 연결감사보수 별도 구분 여부	▼ 예 / 아니오
3-9-2 연결감사보수(3-9-1에서 “예”인 경우)	
3-10 예상 감사 투입시간	
3-10-1 예상 감사 투입시간 상세내역	
3-11 시간당 평균 감사보수	
3-12 감사인 선정주체와의 커뮤니케이션 여부	▼ 예 / 아니오
3-12-1 감사인 선정주체와의 커뮤니케이션 내역	
3-12-2 표준감사시간	
3-13 전기 감사 투입시간(예상)	
3-13-1 전기 감사 투입시간보다 유의하게 증가한 경우 차이 발생 이유	

### 4. 산업전문성

4-1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	▼ 필요 / 불필요 / 해당없음
4-1-1 회사의 주된 산업	
4-2 감사팀내 산업전문가 유무	▼ 있음 / 보완예정 / 없음 / 해당없음
4-2-1 산업전문가명(등록번호)	
4-2-2 추후 보완시기	

### 5. 보고자

5-1 담당사원	공인회계사등록번호		직위		성명	
5-2 연락처						

### 6. 감사계약서 사본 첨부

#### 기재상의 주의

- 1-2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감사인고유번호를 기재한다.
- 2-2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회사고유번호를 기재한다.
- 2-3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2-5 감사계약체결일 현재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코스닥시장주권상장법인, 코넥스시장주권상장법인, 사외이사제출비상장주식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비상장주식회사, 기타비상장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한다.

- 2-5-1 “예” 또는 “아니오”로 기재한다.(2-5-2, 2-5-3, 2-5-4, 2-5-5, 2-5-6, 2-10, 2-12, 2-13-2, 2-15, 2-15-1, 3-2, 3-3-1, 3-4, 3-8, 3-9-1 동일) 금융회사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을 말한다.
- 2-5-2 대형비상장주식회사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사업보고서제출대상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그 외 회사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 2-7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 2-10-1 2-10에서 “예”인 경우만 기재한다.
- 2-13 직전사업연도말 기준(2-13-1, 2-13-2 동일)으로 기재하며,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회사 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회사로서 감사계약체결 보고일 현재 동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보고”라고 기재하고,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부터 2주 이내에 정정 보고한다.(2-13-1, 2-13-2 동일)
- 2-13-2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 2-15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 2-15-1 회사가 「상법」 제542조의11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2-16 회사의 당기 이전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외부감사를 “자유선임”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지정”으로 구분하여 자유선임인 경우 “자유선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경우 “지정”이라고 기재한다.(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사업연도는 “해당없음”을 기재)

(작성 예시)

전기	2기전	3기전	4기전	5기전	6기전
지정	지정	지정	자유선임	자유선임	해당없음

- 2-17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대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구분한다.
- 3-1 “자유선임”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지정”으로 구분한다.
- 3-2 과거에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당해 사업연도에 다시 외부감사 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
- 3-3 감사위원회, 감사, 회사로 구분한다.
- 3-3-1 「상법」 제409조에 따라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 또는 정관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유한회사를 말한다.
- 3-4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연속하는 2, 3사업연도 감사계약인 경우에도 기계약의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여부를 확인한 후 반드시 기재한다.
- 3-6 감사대상 사업연도 입력시 해당 개월수를 입력하되 올림하여 입력(예 : 2개월 5일 → 3개월)한다.
- 3-9 감사계약서상에 기재된 세전 감사보수액을 말한다.
- 3-9-2 3-9-1에서 “예”인 경우만 기재한다.
- 3-10-1 감사단계별·감사참여자구분별 예상감사 투입시간을 작성한 파일을 첨부한다.
- 3-12-1 감사시간, 감사보수 등과 관련하여 감사인 선정주체(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와의 커뮤니케이션 횟수 및 주된 논의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 3-13 전기 감사 투입시간을 기재한다. 감사계약체결 시점에 전기 감사투입시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 감사계약서상 감사보수 협의시 적용한 감사시간(추정치)을 기재한다. 다만, 초도감사인 경우 “0”을 기재한다.
- 3-13-1 예상 감사 투입시간이 전기 감사 투입시간보다 유의하게 증가한 경우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기재한다.

4-1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정을 요청받은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제17조의2 및 별표 7에 따라 피감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기재한다. 피감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주로 영위하는 산업이 별표 7 IV.1.에 따라 산업전문성이 필요한 산업 분류에 해당하지만 감사인에게 산업전문성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불필요"를 기재한다. 피감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주로 영위하는 산업이 별표 7 IV.1.에 따라 산업전문성이 필요한 산업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 또는 자유선임인 경우 등은 "해당없음"을 기재한다.

4-1-1 4-1에서 "필요"인 경우 별표 7 IV.1. 중 해당 산업을 기재한다.

4-2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담당할 감사팀 내 구성원을 기준으로 별표 7 V.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있음"을 기재한다. 산업전문가를 추후 보완하기로 회사와 합의한 경우에는 "보완예정"을 기재한다. 피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 또는 자유선임인 경우 등에는 '해당없음'을 기재한다.

4-2-1 4-2가 "있음"인 경우에 해당 산업전문가의 성명과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2인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재한다.

4-2-2 4-2가 "보완예정"인 경우에 회사와 합의한 추후 보완시기를 기재한다.

5-1 회계법인의 담당이사 또는 감사반의 담당공인회계사를 기재한다.